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8-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8나3184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(친권자모) C

5. H

6. I

7. J

8. K

피고 6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도

담당변호사 박수복

피고 6 내지 8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석왕기, 서해택
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10. 16. 선고 2017가단1634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5. 1.

판 결 선 고 2019. 5. 22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B, C, D, E,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가. 원고에게,

1) 피고 B,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7/704 지분에 관하여,

2)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/704 지분에 관하여,

3) 피고 D,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/704 지분에 관하여,

각 1983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원고의 피고 B, C, D, E,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원고의 피고 I, J, K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, C, D, E,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, C, D, E, H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I, J,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¹⁾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, H과 제1심 공동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중 각 21/168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 중 9/168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E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6/186 지분에 관하여, 피고 I, J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/1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K은 위 각 부동산 중 4/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3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²⁾

1)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은 F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(다만 상속지분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).

2)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에서 피고 I, J, K에 대하여 각 28/16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,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피고 I, J에 대하여는 각 1/12 지분, 피고 K에 대하여는 4/12 지분으로 정정하였다.

이 유

1. 피고 B, C, D, E,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가 1983. 1. 10. L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. 상속관계

1) L은 1983. 11. 30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M(장남), 피고 I, J, K과 N이 있었는데, 피고 I은 1963. 6.경, 피고 J은 1966.경 각 혼인하여 출가한 상태였다. 그 후 N은 1993. 1. 2. 사망하였다.

2) M는 1997. 4. 19. 사망하였는데, 그 상속인으로는 처 O, 자녀인 피고 B, H(개명전 P)과 제1심 공동피고 F(개명전 G), Q이 있었다.

3) Q은 2006. 5. 28.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, E이 있다. O은 2017. 6. 5.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

다. 피고 B, C, D, E, H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3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, L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B, C, D, E, H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의무를 상속(순차 또는 대습상속)하였다.

나아가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피고 B, H은 각 77/704 지분, 피고 C는 33/704 지분, 피고 D, E 각 22/704 지분이다.³⁾

3) 상속지분 계산내역

① L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- M 6/16, I, J 각 1/16, K, N 각 4/16

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, H은 각 77/704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는 33/704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E은 각 22/704 지분에 관하여, 각 1983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I, J,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1983. 1. 10.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,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, C, D, E,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 I, J, K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B, C, D, E,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 원고의 피고 I, J, K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대규

(※ L 사망 당시의 상속지분은 장남 1.5, 차남 1, 출가녀 0.25)

② N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- M 7/16, I, J 각 2/16, K 5/16

③ M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- O 21/176(=7/16×3/11) B, F, H, Q 각 14/176(=7/16×2/11)

④ Q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- C 6/176(=14/176×3/7), D, E 각 4/176(=14/176×2/7)

⑤ O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- B, F, H 각 77/704(=14/176+(21/176×1/4)), C 33/704(=6/176+(21/176×1/4×3/7)), D, E 각 22/704(=4/176+(21/176×1/4×2/7))

판사 정지영

판사 예혁준

목 록

1. 경상북도 울진군
대225㎡

2. 경상북도 울진군
전79㎡

3. 경상북도 울진군
전162㎡

4. 경상북도 울진군
전238㎡

